

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12. 26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 26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2차조례특위(2000.12.29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 또는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가운데,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특정인을 위한 사무등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무에 대해 원가보상 차원에서 그처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범위와 요율을 정하고 수수료 수입을 증대코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제3조(요율)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를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128조에 규정되어 있음.
- 금번 개정안은 세목별 납세증명등 6건의 인상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, 분사무소 설치등 2건이 신설 되겠으며,
 - 인상되는 6건은 지방세와 관련된 제증명으로 원가 675원의 %인 300원을 400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것은 본군의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짐.
 - 신설되는 2건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고 자체원가 계산에 의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지역적 여건이 고려된점이 인접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(증명)란의 11.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
○세목별 납세증명	1통	400원	
○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과세증명	1통	400원	
○세목별 과세증명	1통	400원	
○징수유예 증명	1통	400원	

별표1중 (인가,허가,신고,등록,지정,확인 등)란의 6.건설관계 중 “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, 도로부지(지하도,지하상가,기타)점용허가”를 다음과 같이 하고 “단, 점용료가 300,000이하인 경우”는 삭제하고 “○권리변경(재개발지구)행위허가 신청”란 다음에 “○부동산중개업자 등록(중개업자)분사무소 설치, ○부동산중개업자 등록(법인)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수수료액	비 고
○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	1건	1,000원	
○도로부지(지하도,지하상가,기타)점용허가	1건	1,000원	
.	.	.	
.	.	.	
.	.	.	
.	.	.	
○부동산중개업자 등록(중개업자), 분사무소설치	1건	5,000원	
○부동산중개업자 등록(법인)	1건	1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